

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14] <신설 2024. 6. 28.>

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 번호		품명	규격 등	세율 (%)	한계수량
호	소호				
0803		바나나[플랜틴(plantain)을 포함하며,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]			
0803	90	기타	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.	0	수입전량
0804		대추야자·무화과·파인애플·아보카도(avocado)·구아바(guava)·망고(mango)·망고스틴(mangosteen)(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804	30	파인애플	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.	0	수입전량
0804	40	아보카도(avocado)	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.	0	수입전량
0804	50	구아바(guava)·망고(mango)·망고스틴(mangosteen)	망고(mango)(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) 및 망고스틴(mangosteen)(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)	0	수입전량
0805		감귤류의 과실(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805	2	만다린(mandarins)[탄제린(tan			

		gerines) · 세트수머(satsumas)를 포함한다], 클레멘타인(clementines), 윌킹(wilking)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			
0805	21	만다린(mandarins)[탄제린(tangerines) · 세트수머(satsumas)를 포함한다]	감귤은 제외하고,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.	10	수입전량
0805	40	그레이프프루트(grapefruit)와 포멜로(pomelo)	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.	0	수입전량
0809		살구 · 체리 · 복숭아[넥타린(nectarine)을 포함한다] · 자두 · 슬로(sloe)(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809	2	체리			
0809	29	기타	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.	0	수입전량
0810		그 밖의 과실(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810	50	키위프루트(kiwifruit)	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.	5	수입전량
0810	60	두리안(durian)	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.	5	수입전량